

의안번호	제 34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운동선수·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

발 의 자	김성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7월 4일

충청북도 운동선수·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

(김성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
발의자 : 김성대, 노금식, 최정훈,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
임영은

1. 제정이유

- 최근 체육계 (성)폭행, 협박 등 가혹행위로 운동선수·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도록 하고,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스포츠인권 등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 및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~제4조)
- 스포츠인권헌장(안 제5조) 및 스포츠인권 교육(안 제6조)

-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-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·운영 등 및 비밀누설 금지(안 제8조~제9조)
- 스포츠인권 실태조사(안 제10조).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체육진흥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2023. 7. 5. ~ 7. 10.(5일간)

충청북도 운동선수·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인권”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. “운동선수”란 충청북도체육회·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체육인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운동선수·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·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
2.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
3. 체육계 인권침해(폭력 및 성폭력 포함) 관련 실태조사
4. 체육계 인권침해(폭력 및 성폭력 포함) 예방교육 및 홍보
5.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
6.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스포츠인권헌장)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6조(스포츠인권 교육)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·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운동선수·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‘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’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문화체육관광국장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운동선수·체육인

다.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

라. 그 밖에 스포츠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③ 자문단의 구성·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폭행·협박·성폭력·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체육단체

2.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3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·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운동선수·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,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「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한 신고 및 상담시설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,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,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,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8. 18.>

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8. 18.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·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20. 8. 18.>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, 소속 이력, 수상 정보,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8.> [본조신설 2020. 2. 4.]

제18조의10(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,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8. 18.>
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8. 18.>
-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·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8. 18.> [본조신설 2020. 2. 4.]

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제18조의4(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8. 5., 2021. 2. 19., 2021. 6. 1.>

1.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
 2.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 3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·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0. 8. 5., 2021. 2. 19.> [본조신설 2017. 3. 15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는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※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으로 운영 중이며 신고·상담 시설은 도와 체육회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중으로 비용 산정 어려움

○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정진자